

## 특별전형 해당자

### 1. 나무병원종사자

: 나무의사제도 시행('18.6.27) 당시

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**수목보호기술자**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**식물보호기사·산업기사**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·처방·치유를 업으로 하는 **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**임을 증빙하는 자

※ 위의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제출 서류

- ① 2018. 6. 27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사본  
(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, 식물보호산업기사)
- ②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(수목피해 진단, 처방, 수목피해 치유,방제) 등록증
- ③ 경력증명서(붙임4)
-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

### 2. 중복접수자(해당없음)